

국회법령

차 례

■ 노인복지법령	327
■ 협약의료기관 및 축탁의사 운영규정	523
■ (舊)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7호<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유예 관련>	535

목 차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335 제1조의2(정의) 335 제2조(기본이념) 336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337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37 제5조(노인실태조사) 338 제6조(노인의 날 등) 339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339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339	제1조(목적) 335 제2조~제10조 삭제 338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339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339 제13조(상담원의 직무) 340 제14조(상담원의 보수) 340	제1조(목적) 335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338
제 2 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2007.4.25> 341 제10조 삭제<2007.4.25> 341 제11조 삭제<2007.4.25> 341 제12조 삭제<2007.4.25> 341	제15조 삭제<2007.9.28> 341 제16조 삭제<2007.9.28> 341 제17조 삭제<2007.9.28> 341 제17조의2 삭제<2007.9.28> 341	제2조 삭제<2007.10.16> 341 제3조 삭제<2007.10.16> 341 제4조 삭제<2007.10.16> 341 제5조 삭제<2007.10.16> 341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3조 삭제 <2007.4.25> 341		제6조 삭제 <2007.10.16> 341
제14조 삭제 <2007.4.25> 341		
제15조 삭제 <2007.4.25> 341		
제16조 삭제 <2007.4.25> 341		
제17조 삭제 <2007.4.25> 341		
제18조 삭제 <2007.4.25> 341		
제19조 삭제 <2007.4.25> 341		
제20조 삭제 <2007.4.25> 341		
제21조 삭제 <2007.4.25> 341		
제22조 삭제 <2007.4.25> 341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341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342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342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344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345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345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345
제25조(생업지원) 346		
제26조(경로우대) 346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346	
제27조(건강진단 등) 347	제20조(건강진단 등) 347	제8조(건강진단기관) 347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347 제28조(상담·임소 등의 조치) …………… 348 제29조(치매관리사업) …………… 349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350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 352		제9조(건강진단) …………… 347 제10조(임소조치) …………… 348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 349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 350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 352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352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353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353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353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 354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 357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357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359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357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358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 360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360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 359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364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360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 360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 363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364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369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366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370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367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372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임시조치) 368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369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374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370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372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376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372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 37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 373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374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380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운영) 380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376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380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 380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376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기준) 381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378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382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382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383 제39조의9(금지행위) 384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385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385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385 제29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386 제29조의7(증표) 389
제39조의11(조사 등) 388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389 제40조(변경 · 폐지 등) 390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390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390
제41조(수탁의무) 393 제42조(감독) 393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395 제44조(청문) 396		제30조의2(보고) 394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396
제 5 장 비 용		
제45조(비용의 부담) 397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398	제22조(비용의 부담) 397 제23조(비용의 수납) 398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398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398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399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7조(비용의 보조) 400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401 제49조(조세감면) 401	제24조(비용의 보조) 400	
제 6 장 보 칙		
제50조(심사청구 등) 402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403 제52조 삭제 403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403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403 제36조(서식) 403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404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404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405	제26조 삭제<2007.12.13> 404	
제 7 장 벌 칙		
제55조의2(벌칙) 405 제55조의3(벌칙) 405 제55조의4(벌칙) 406 제56조(벌칙) 406 제56조의2(벌칙) 407 제57조(벌칙) 407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8조 삭제<2007.4.25> 408 제59조(벌칙) 408 제60조(양벌 규정) 408 제61조 삭제<2007.4.25> 409 제61조의2(과태료) 409 제62조(이행강제금) 410 부 칙 412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09 부 칙 412 별 표 425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410 제38조 삭제 410 부 칙 412 별 표 425 별지서식 425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81. 6. 5 법률 제3453호 전문개정 1997. 8.22 법률 제5359호 개정 1999. 2. 8 법률 제5851호 2000. 1.12 법률 제6124호 2003. 5.29 법률 제6916호 2004. 1.29 법률 제7152호 2005. 3.31 법률 제7452호 2005. 7.13 법률 제7585호 2007. 8. 3 법률 제8608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3.21 법률 제8974호	제정 1982. 2.17 대통령령 제10731호 전문개정 1998. 6.20 대통령령 제1581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 제16327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2000. 2.28 대통령령 제16737호 2002. 3. 9 대통령령 제17540호 2003. 5.29 대통령령 제17983호 2004. 7.31 대통령령 제18502호 신설 2005.12.27 대통령령 제19190호 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7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7.24 대통령령 제20938호	제정 1982. 9.20 보 건 부령 제714호 전문개정 1998. 9. 4 보 건 부령 제 74호 개정 1999. 8.25 보 건 부령 제130호 2001. 2.10 보 건 부령 제189호 2002.12.20 보 건 부령 제231호 2004. 8. 7 보 건 부령 제294호 2005.10.17 보 건 부령 제333호 2007.10.16 보 건 부령 제417호 2008. 1.28 보 건 부령 제437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48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2조 삭제 <1999.8.7> 제3조 삭제 <1999.8.7>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삭제 <1999.8.7>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5.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2조 삭제 <2007.10.16>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본조신설 2005.7.13]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7]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탁과 협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7]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 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 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 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 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 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 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 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 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3.3>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 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 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개정 2006.10.20>)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0, 2008.3.3>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 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 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입소 안내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3>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 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전문개정 2007.5.8]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이하 "전년도"라 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소득액"이라 함)의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조대상자"라 함)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②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입소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 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협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것 [본조신설 2007.12.1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 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12.13>]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②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 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다. <개정 2008.1.28>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 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 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 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1999.2.8>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 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 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2005.10.17, 2006.7.3, 2007.5.8, 2008.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 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8.25, 2007.5.8>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개정 2008.1.28>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후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전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2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전문개정 2008.1.28]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개정 2008.1.28>)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다. <개정 2008.1.28>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1999.8.25]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7.12.13>]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6.6.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4.7.30] [제20조의4에서 이동 <2007.12.13>]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범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8(보호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별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8]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별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 <2007.8.3>]		[제2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 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을 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②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 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11(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1은 제39조의12로 이동 <2007.8.3>]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제29조의7(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8>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2에서 이동 <2007.8.3>]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개정 1999.8.25>)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40조(변경·폐지 등 <개정 1999.2.8>)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개정 1999.8.25>)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직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임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④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8>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		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 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본조신설 1999.8.25]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제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장 비 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 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개정 1999.8.25>) ①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⑥삭제 <1999.2.8>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1. 삭제 <1999.8.25> 2. 삭제 <1999.8.25>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 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인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장 보 칙 제50조(심사청구 등)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 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예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예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제52조 삭제 <1999.2.8>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	제26조 삭제 <2007.12.13>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0.16, 2008.3.3> [전문개정 2001.2.10]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개정 2007.8.3>)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7장 별 칙 제55조의2(별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7.8.3] 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5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숙자 [본조신설 2007.8.3]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8조 삭제 <2007.4.25>		
제59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삭제 <2007.8.3>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8.3> 제61조 삭제 <2007.4.25>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1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38조 삭제 <2007.10.16>
제6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부 칙 <제15813호, 19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 칙 <제74호, 199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
부 칙 <제5359호, 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 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5851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09>생략 부 칙 <제16527호, 19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용한다. 제3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영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30호, 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 2000.1.12>	부 칙 <제16737호,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540호, 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983호, 2003.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료법시행규칙) <제180호,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관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제7152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 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02호,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90호, 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 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당시 중앙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기금·문서·사무용품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89호,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 칙 <제7452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9조의3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항·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 칙 <제7585호, 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200호, 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내지 <241>생략 부 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0296호,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31호,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94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 칙(의료법) <제8366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 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 2007.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 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 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 2007.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371호, 2006.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부 칙(기초노령연금법) <제8385호, 2007.4.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 칙 <제20447호, 2007.12.13>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 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8608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 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제20938호, 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02호, 200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17호, 200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 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제437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 칙(정부조작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5>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부 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노 인 복 지 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 <제48호, 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제19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08.7.2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200만원
2. 법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300만원
3. 법 제3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법 제61조의2제1항	200만원
4.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100만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개정 2008.1.28>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 (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 관련)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사진척내용	
		5층 이상 시설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 이상	전체층수의 $\frac{1}{4}$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frac{1}{2}$ 이상이 완성된 때
기타	20% 이상	전체층수의 $\frac{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08.7.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주에도 해당권의 부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춘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	○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노인복지주택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가. 침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 야 한다. (4)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가. 침실 (1)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 이어야 한다. (2)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한다. (5)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한다. (5)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시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환의 사를 포함 한다)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1명	
	노인공동생활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개정 2008.7.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축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축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축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제지를 관찰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일지
- 라. 예산서 및 결산서
-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별	사 업 내 용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 · 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테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 · 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8.7.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임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임소자로부터 임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춘 것
-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임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체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임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증내용 : 임소자의 임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 임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임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시설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피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7)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9)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래밍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환의 사를 포함 한다)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1명 (임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임소자 25명당 1명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임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임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임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임소자 3명당 1명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비고 :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전담의사(한의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일지
- 라. 예산서 및 결산서
-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업 기 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3항 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 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목 욕장	기타부대 시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 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 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노인휴양소	1명						1명

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 및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휴양소의 경우에 한한다)

-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노인복지관·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①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②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③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휴양소	휴양노인들의 교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8.7.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요양서비스	1	1	-
방문목욕서비스	1	1	1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구 분	거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시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단기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시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 (가)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하여야 한다.
 -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임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사)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아)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자)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 (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4)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6)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세면장 및 목욕실
-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욕탕사위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3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서비스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필요수	필요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제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군·구·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일지
 - 라. 예산서 및 결산서
 -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사.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 아. 이용자 명부
 -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 1일

(2)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약·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신체에 관한 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2)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3)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2)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방문목욕서비스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함
주·야간보호 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서비스	가. 급식, 치료,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 (제29조의2제1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1)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 방문간호의 이해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16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노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가래 등 흡인	6	8
			•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과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5
		소 계			①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① + ② + ③)				240	

비고 :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8	5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1	2	
		소 계			① 40	② 40
	현장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소 계		③ 40				
총(① + ② + ③)				120		

비고: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면제한다.

(3)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가)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12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총시간			5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서비스 이용지원	4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승급과정(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방문간호의 이해	8	-	
	요양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	3	2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과약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2
	소 계				① 40	② 20
총(① + ②)				60		

2. 경력증명발급기관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나.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 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교육과정 운영기준

-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료기준

- 가.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 나.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의3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강의실	1. 강의실(전용) :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 1명당 2㎡이상
화장실 · 급수시설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채광 · 환기 · 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한다),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추는 것

- (1)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2)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 (3)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4)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 (5)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6) 개인위생용품 : 세면 · 세발 · 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7)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는 것

3. 직원배치기준

구 분		수	자 격 기 준
전담행정요원		1인	없음
교수요원	전임	1인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	필요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29조의5 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
-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추는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력 배치기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기관의 장 1인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영 제20조의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 (가) 상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를 겸직할 수 있다.
- (나) 상담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1] <개정 2008.1.28>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5. 수탁의무 위반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6. 감독위반	법 제41조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 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7. 비용의 수납위반 가.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8.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항)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1.28>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명 :		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31313-13911일
 98.5.20 승인

87mm×63mm
 (보존용지(1종) 120g/m²)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소관 과 · 실 등의 명칭)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입소 의뢰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의
귀 시설입소를 의뢰합니다.

입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양의무자	성 명		입소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치매환자상담대장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치매경도판단	상담 및 조치사항			상담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1차	2차	3차		

31313-14111비
98.5.20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중) 70g/m²)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명 칭		시설의종류	
복지 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에정일	
직 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입액		지출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 ·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입소(이용)정원 :

구 분	제공여부	정원
방문요양서비스		명
방문목욕서비스		명
주·야간보호서비스		명
단기보호서비스		명
총 정원수		명

비고 :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변 경 사 항		
일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노인전문병원설치 허가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관할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처리부서	보건과 또는 의약과
유의사항	1. 노인전문병원 설치자가 그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33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67조). 3. 허가사항 중 설치장소의 이전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69조). 4.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71조).		

허가번호 제 호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				
의료기관	명 칭			
	소 재 지			
	진료과목			
설 치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 원 실	실	병 상	병상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인]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	사업개시예정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 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4cm)
	주소	(전화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발급신청 시)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신청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수료
				1만원

제 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급 : 급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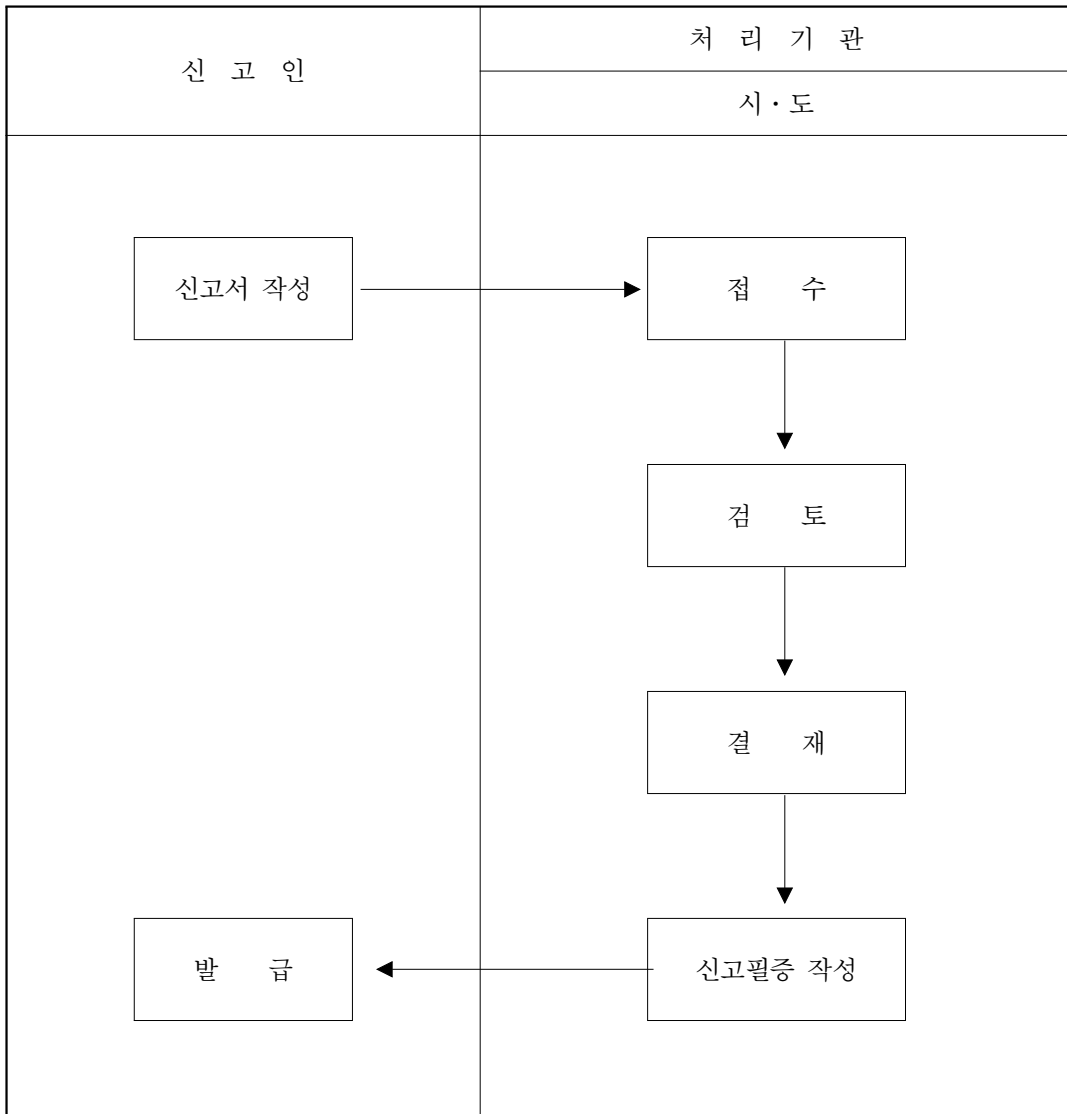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 포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설치일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뒤 쪽)

변 경 사 항		
일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의8서식] <신설 2008.1.28>

구 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신상카드	발생 당시 사진
	1. 182신고(유·무)					
	1. 실종	2. 가출	3. 기타			
	1. 남		2. 여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세 (추정·확실)		
	주소		본적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 및 외적 사항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cm	1. 야윽 2. 비대 3. 보통	1. 둥근형 2. 긴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 장발 2. 단발 3. 삭발	1. 곱슬 2. 파마 3. 카트	상의	하의	신발
	그 밖의 신체특징							
특이 사항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비고		
신고 자	신고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 소						
기관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설비	사 무 실	m ²	상담실	m ²	프로그램운영실	m ²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 이외 전문자격소지자		
		명	명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제 호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정조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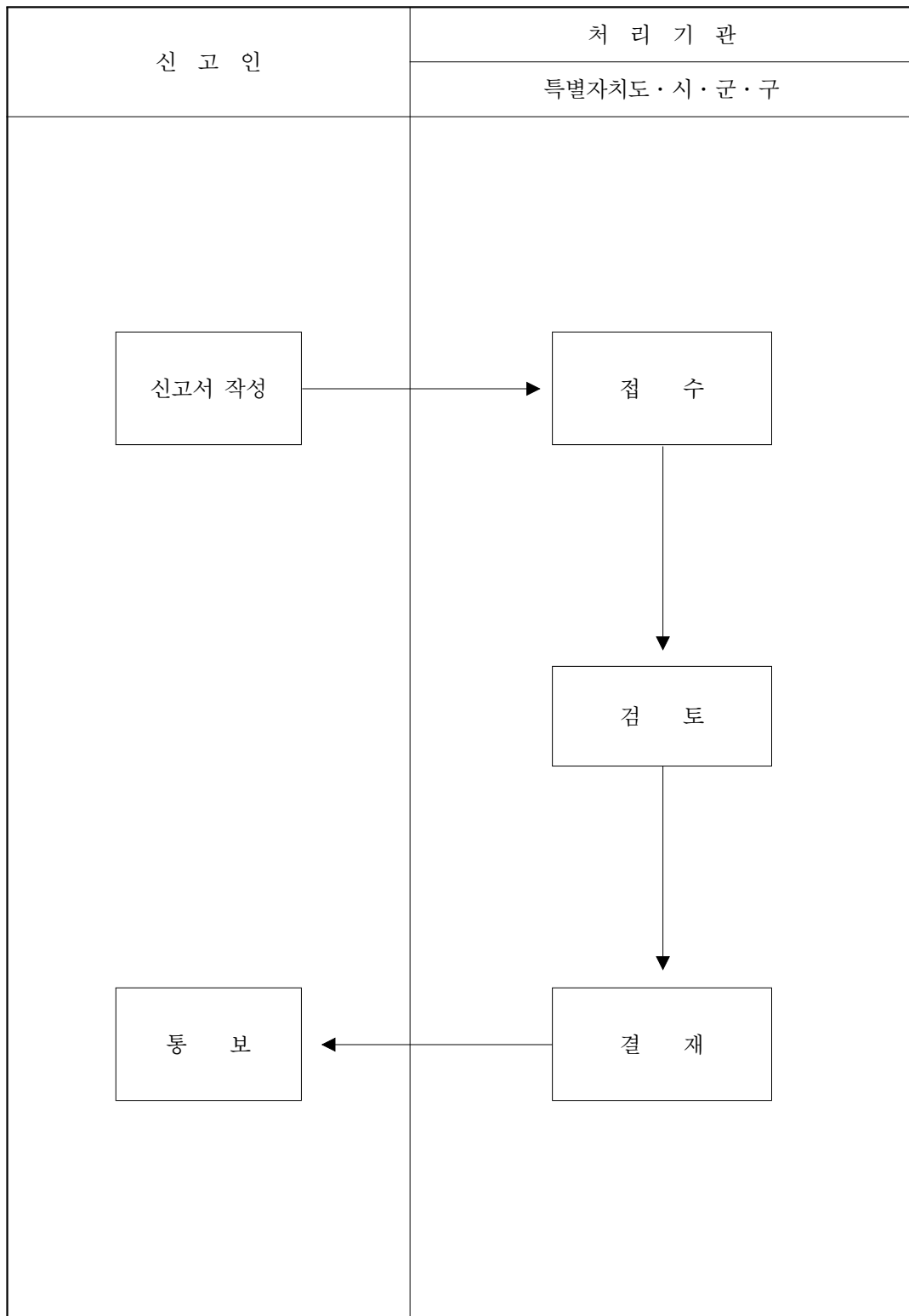
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속 :	사진 (2.5cm×3cm)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100mm×80mm(보존용지(1종) 120g/㎡)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제 호 년 월 일	
	소재지	(전화 :)				
시설(기관)의 폐지 (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시설	처리기간 4일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전화 :)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의명칭		
	시설의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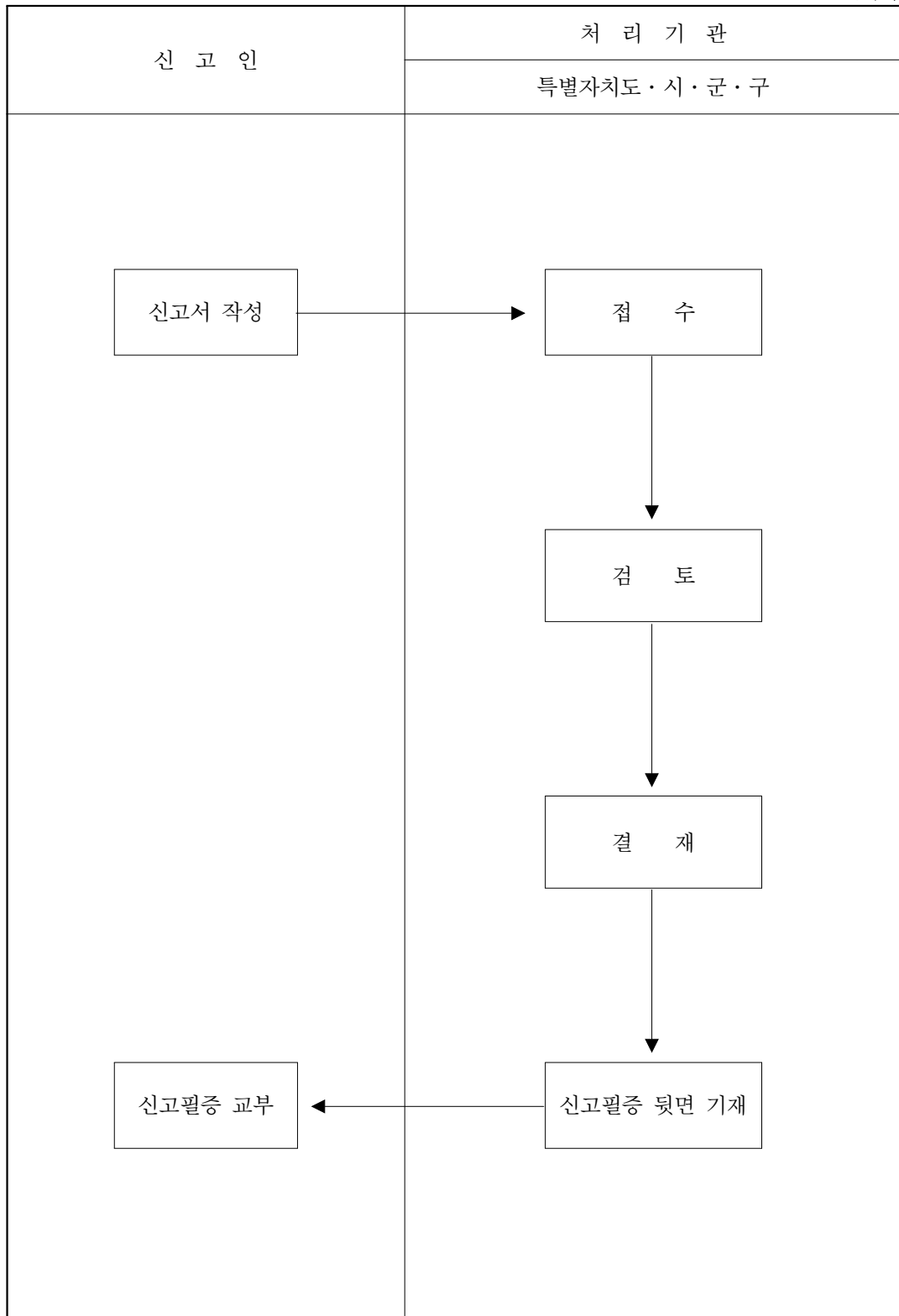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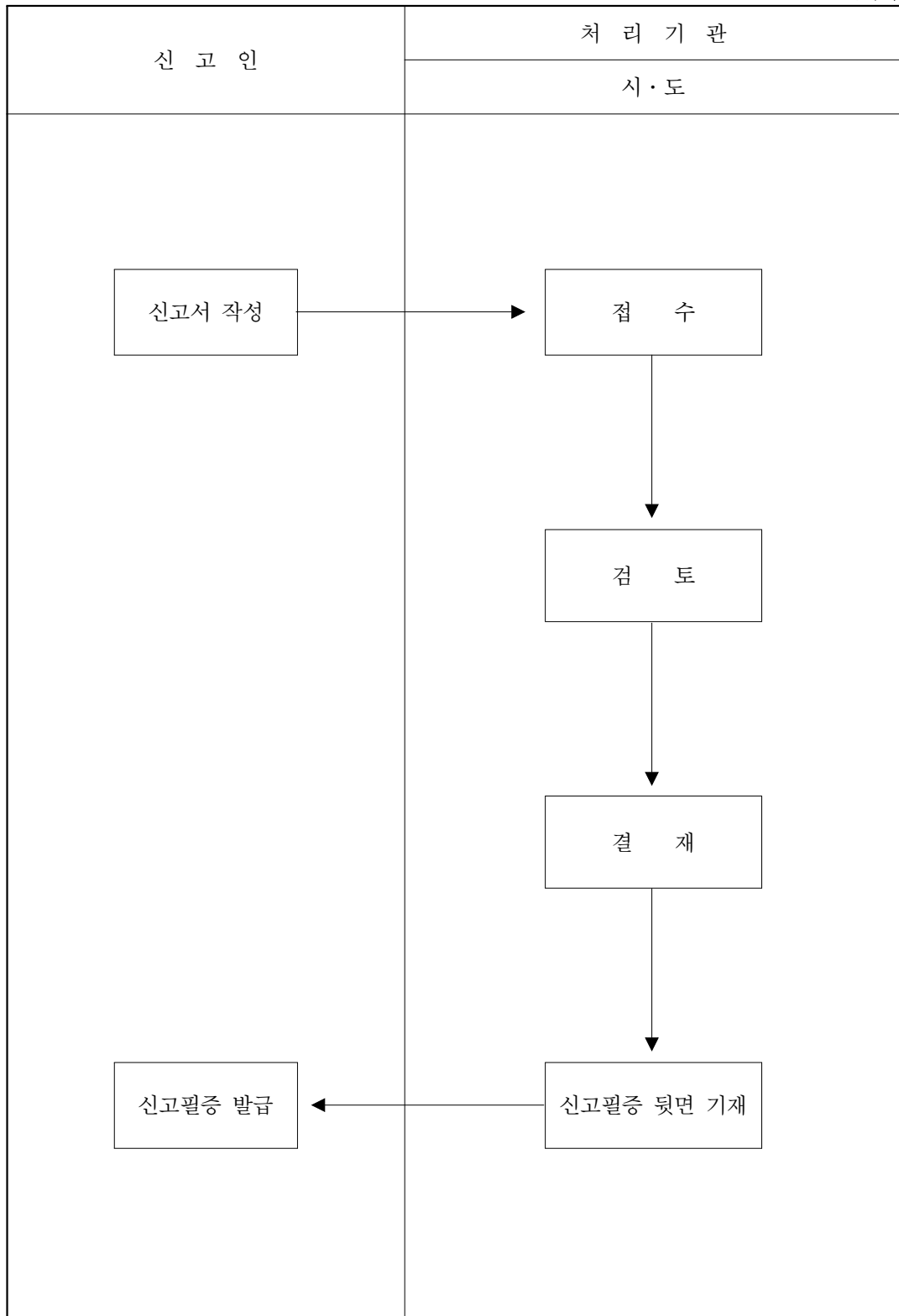
(뒤쪽)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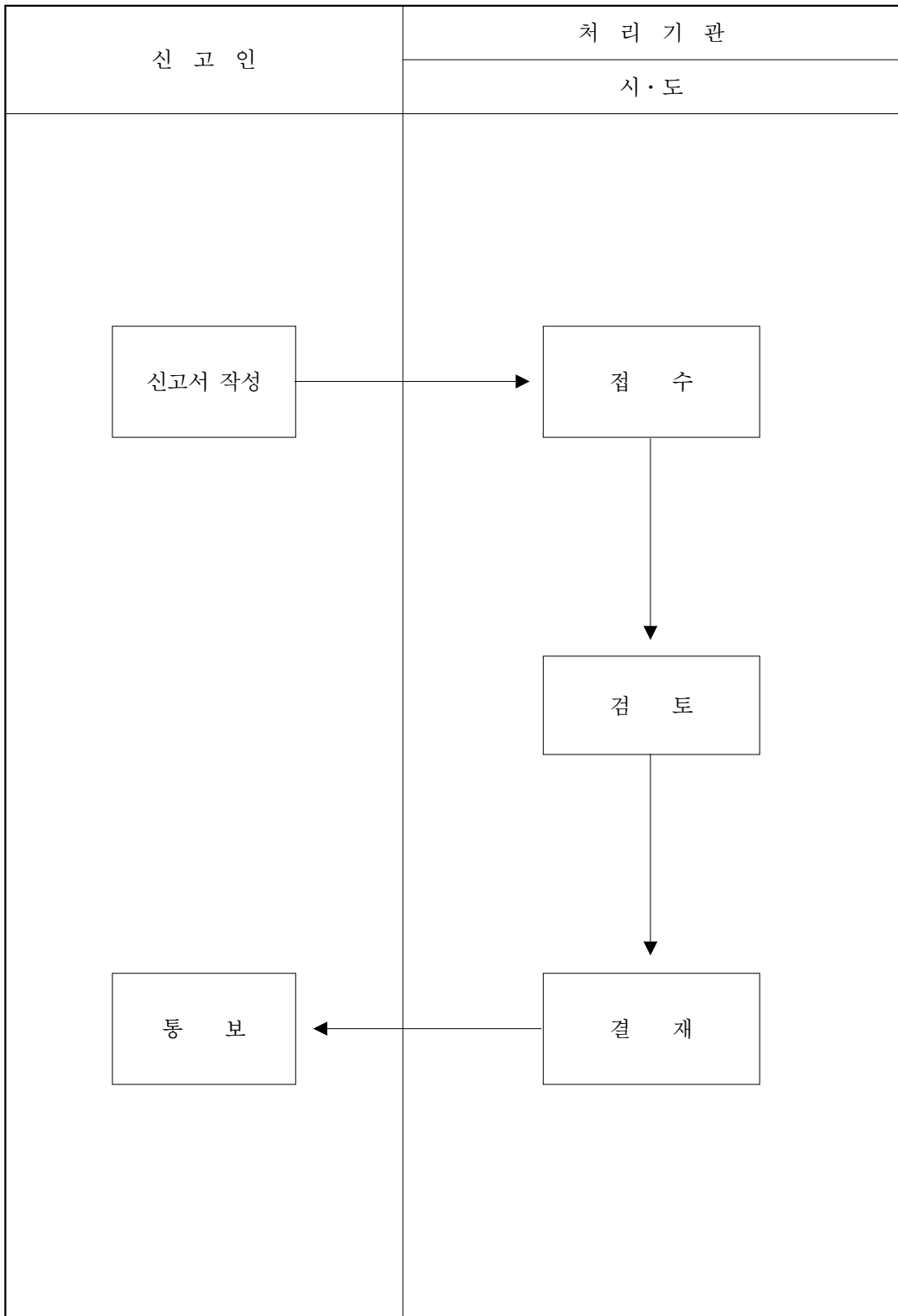
(뒤쪽)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기관의 폐지 (휴지) 예정일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시설을 (□폐지, □휴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시 설 명											
우 ○○○-○○○ 주소 / 전화()○○○-○○○○ /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년)						시행일자 : . . [인] 발신 :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기재합니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 주체	입소 정원	시설 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입소자수			()년말 입소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적습니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 주체	입소 정원	시설 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입소자수			()년말 입소자수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 주체	이용 정원	시설 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기타 봉사원						
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다. 주·야간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종류	시설명칭 및 소재지	설치 주체	이용 정원	시설 규모 (㎡)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이용자수 (기초/일반)		()년말 이용자수 (기초/일반)			

시 설 명												
우 〇〇〇-〇〇〇 주소 /전화()〇〇〇-〇〇〇〇 /전송()〇〇〇-〇〇〇〇 〇〇과 과장 〇〇〇 서기관(또는 사무관) 〇〇〇 담당자 〇〇〇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처 보존기간)								
수 신 :				발신 : [인]								
제 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 입소자수를 적습니다.												
구분	시설종류	개소수	입소 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입소자수 (입원환자)	()년말 입소자수 (입원환자)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구 분	개소수	이용 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구 분	개소수	이용 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계	요양 보호사				기타
								1급	2급			
재가노인복지시설												

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명칭	제공 서비스 종류 (①~④)	설치 주체	이용 정원	소재지	종사자수			시설 규모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계	요양보호사					기타
							1급	2급				
계									m²			
○○시												
○○시												
○○군												
○○군												
○○구												
○○구												

제공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①) 방문목욕(②) 주·야간보호(③) 단기보호(④)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1.28>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8.3.3>

제 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성 명 :	사 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31313-15611일
98.5.20 승인

87mm×63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8.25>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8.25>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1999.8.25>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과목 선정기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협약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 ”과 “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약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합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 2]

진료기록부

[입소자 포괄적 평가]

Unit No. : _____	Date : 20____ / ____ / ____
Name : _____	Sex/Age : _____ / _____
주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A. 진단명(기존 질병)

- 주된 증상 (_____) 가족력(_____)
고혈압 (_____) 당뇨 (_____) 골관절염 (_____) 골다공증 (_____)
뇌졸중 (_____) 관상동맥질환 (_____) 심부전 (_____)
부정맥 (_____) COPD (_____) 암 (_____) 치매 (_____)
파킨슨병 (_____) 백내장 (_____) 갑상선 ↑ ↓ (_____) 기타 (_____)

B.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C. Medical & Fucntional

Ht/Wt : _____ BP: _____ PR : _____
Vision : _____ Hearing : _____ ADL : _____ IADL : _____
Incontinence : _____ Constipation: _____ Nutrition : _____
GDS : _____ K-MMSE : _____

Mobility (the timed “up and go” test):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D.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고혈압제 (_____) 이뇨제 (_____) 당뇨약 (_____)
항우울제 (_____) 안정제 (_____) 진통제 (_____)
항히스타민제 (_____) 혈관확장제 (_____)
혈관수축제 (_____) 마약류 (_____) 한약 (_____)
기타 (_____)

※ 약품명 기재

E. Problem List : 현재 하고 있는 치료나 처치의 문제점

(Active)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Inactive)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F. Progress note (Medical Care Plan): 앞으로 해야 될 처치나 투약 내용 등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Essential>

CBC _____	ESR _____
UA _____	
Stool _____	T.P./Alb _____
FBS _____	
BUN/Cr _____	Uric Acid _____
T.Bilirubin _____	
AST/ALT _____	ALP _____
T.Chol _____	
TSH/T4 _____	
EKG _____	
Chest PA _____	
L-S Spine, Knee _____	

[년/ 월/ 일]

[붙임 3]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1. 의식상태

☐ 정상	☐ 졸린상태	☐ 질문에만 반응
☐ 통증에만 반응	☐ 통증에도 반응없음	

2. 활동정도

☐ 자유로움	☐ 자유롭지 못함
☐ 마비: 부위	☐ 감각이상: 부위

3. 호흡양상

☐ 기관지절개관 #	☐ 산소사용	☐ 기침: 객담	☐ 통증: 부위
	ℓ /min	객혈	양상
☐ 호흡곤란	☐ 청색증	☐ 기좌호흡	☐ 기타

4. 소화기기능

식이형태	☐ 구강	☐ 위관 #	☐ 수액
체중변화	☐ 변화있음	☐ 증가 kg	☐ 감소 kg
☐ 식욕부진	☐ 연하장애	☐ 오심	☐ 구토
☐ 변비	☐ 설사	☐ 통증: 부위	양상

5. 심혈관기능

☐ 흉통: 부위	☐ 부종: 부위	☐ 심계항진	☐ 청색증
양상			
☐ 부정맥	☐ 심잡음	☐ weak pulse	☐ 기타

6. 배설기능

☐ 소변: 회/일	☐ 색깔 및 양상:	☐ 유치도뇨관#
☐ 빈뇨	☐ 혈뇨	☐ 뇨실금
☐ 뇨긴박감	☐ 대변: 회/일	☐ 색깔 및 양상:
		☐ 배뇨곤란

7. 피부상태

☐ 욕창(크기, 부위, 정도)			
☐ 발진	☐ 소양감	☐ 탈수	☐ 정상

8. 건강행위

☐ 술(양/종류) /	☐ 담배(양/흡연력)
☐ 수면습관	☐ 운동습관

9.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침상에서의 움직임	☐ 스스로	☐ 도움필요	☐ 불능
식사 및 운동	☐ 스스로	☐ 도움필요	☐ 불능
이동 및 계단오르기	☐ 스스로	☐ 도움필요	☐ 불능
옷입고 벗기 및 개인위생	☐ 스스로	☐ 도움필요	☐ 불능

10. 정서상태

☐ 안정	☐ 불안	☐ 슬픔	☐ 우울	☐ 긴장	☐ 거부	☐ 기타
-----------------------------	-----------------------------	-----------------------------	-----------------------------	-----------------------------	-----------------------------	-----------------------------

[붙임 4]

입소자 간호기록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주소				전화번호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신장	cm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 사별 ☐ 기타
입소일자		직업/학력:		종교	☐ 천주교 ☐ 기독교 ☐ 불교 ☐ 기타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일반 ☐ 기타		
주진단명					
현 병력					
과거력	☐ 당뇨 ☐ 고혈압 ☐ 결핵 ☐ 간염 ☐ 뇌졸중 ☐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 명료 ☐ 혼돈 ☐ 반의식 ☐ 무의식			
	정서상태	☐ 안정 ☐ 불안 ☐ 분노 ☐ 슬픔 ☐ 우울			
	식이	☐ 정상식 ☐ 치료식() Kcal			
	활동범위	☐ 보행가능 ☐ 도움으로가능 ☐ 완전의존			
	보조기 사용여부				
	상처 (유 / 무)				
	Tube (유 / 무)				
간호계획					

간호사 서명 :

[붙임 5]

건강 관리 기록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일 자											
입소일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체중											
당뇨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간 호 제 공 내 용											
간호사 서명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 신고절차

□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 신고절차

가. 최초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미 지정)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불요)
 - 시·군·구청장은 자료 확인
2.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 시·군·구청장은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
- 시·군·구청장은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을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다.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신고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및 지정일자 기재)하되, 서식의 변경사유란에 변경사유를 기재(예, 촉탁의사 변경 (의사 000에서 의사 000으로 변경), 협약의료기관 변경(00병원에서 00병원으로 변경 등))
- 시·군·구청장은 자료 확인 후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사본을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0요양센터)은 해당 자료를 공단내부 전산에 변경 입력하고 처방전 발급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 조치사항

- 시·군·구
 - 서울 복지 정보시스템에 협약의료기관 등 입력테이블 추가 필요
 - 시스템 수정이 불가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관리 D/B에 협약의료기관 등 입력 테이블 개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단 보유 자료 일일 연계 시스템 개발

붙임 :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1부

불 입

축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주 소	(전화 :)						
복지 시설	시설의 명칭		장기요양 기관기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시설장 (관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축탁 의사 및 의료 기관	축탁의사	축탁의사		면허사항		종사이력		
		성명	주민등록 번호	면허번호	취득일자	입사일자	퇴직일자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대표자		협약기간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협약개시일	협약종료일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 및 별표 5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협약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舊)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7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유예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8]

제2조 삭제 <2007.10.16>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개정 2006.10.20>)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0>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5.8]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10, 2002.12.20, 2004.8.7, 2007.5.8>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가. 생활보장대상노인
 - 나.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

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0>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4.8.7>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0>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노인요

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⑤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2005.10.17, 2006.7.3, 2007.5.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8.25, 2007.5.8>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

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9.8.25]

제29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6(증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8.7]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개정 1999.8.25>)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8.25, 2005.6.8>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개정 1999.8.25>) ①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 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1. 삭제 <1999.8.25>

2. 삭제 <1999.8.25>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0.16>
[전문개정 2001.2.10]

제37조 삭제 <1999.8.25>

제38조 삭제 <2007.10.16>

부 칙 <제74호, 199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30호, 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의료법시행규칙) <제180호,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89호,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31호,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94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 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1호, 2006.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02호, 200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17호, 2007.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舊)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7호 별표

[별표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사진척내용	
		5층 이상 시설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 이상	전체층수의 $\frac{1}{4}$ 이상에 해당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frac{1}{2}$ 이상이 완성 된 때
기타	20% 이상	전체층수의 $\frac{1}{2}$ 이상에 해당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별표 2] <개정 2002.12.20, 2006.10.2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17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양로시설 · 실버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 (2) 실버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 채광 ·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 · 화장실 ·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 ·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 ·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임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양로시설 및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임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임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증내용 : 임소자의 임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 임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임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4.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유료노인복지주택			
구분	시설기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가. 거실 (1)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지취형의 거실을 둘 경우 조리시설을 갖춘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 거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정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

시설의 종류 구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아.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직종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의사 또는 축택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지도원
	시설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입소자 100인 초 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4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입소자 100인 초 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다만, 세탁 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인						1인	1인			1인(부대복지시 설 관리에 필요 한 자포함)	1인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3] <개정 1999.8.2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17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진단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축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 축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축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제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일지
- 라. 예산서 및 결산서
-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계질의서류
-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 카. 축탁회사 근무상황부(축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보호조원, 생활지도원,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전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간담회의 설치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5인 이상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제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임소보증금의 합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임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임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내용 : 임소자의 임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임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임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거실	사무실	외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피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노인 요양 시설 · 선택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1	1	1	1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 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설편	구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제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임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임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 니할 수 있음)	1
	임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1	

4.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구분	설비기준	가. 거실 (1)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거실 (1)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거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4) 합숙용 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두어야 한다. (9)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두어야 한다. (9)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두어야 한다. (8)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거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두어야 한다. (8) 거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11) 치매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구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의무실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 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경사로 :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아.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 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직종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축택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축택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 설비 노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임소자 1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	임소자 7인당 1인	1인(임소자 100 인 이상인 경 우에 한함)	1인(임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임소자 100인초과시마 다 1인 추가)	임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임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임소자 7인당 1인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지 아니할 수 있음)	
	임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임소자 1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	임소자 5인당 1인	1인(임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임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임소자 100인초과시마 다 1인 추가)	임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임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임소자 5인당 1인	-	-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임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추방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임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임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 야 함)	1인 (임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임소자 3인당 1인	1인(임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임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임소자 100인초과시 마다 1인 추가)	임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임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지 아니할 수 있음)	
	임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임소자 3인당 1인					
	임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임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 야 함)	1인 (임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임소자 3인당 1인	1인(임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임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임소자 100인초과시 마다 1인 추가)	임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의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임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임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임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임소자 3인당 1인					

비고

1. 생활복지사 : 임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임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 다.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보호대상자를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인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가.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일지
 - 라. 예산서 및 결산서
 -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마.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취사부·세탁부·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바.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운영간담회의 설치

-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3항 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7] <개정 2002.12.20, 2006.10.2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6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복지회관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2)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 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목 욕장	기타부대 시설
노인복지회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 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상담지도원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인	2인 이상		1인	1인	1인
	노인교실	1인		1인			
	노인휴양소	1인					1인

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회관 및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휴양소의 경우에 한한다)

-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노인복지회관·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

-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별 운 영 기 준
노인복지회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①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②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③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 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휴양소	휴양노인들의 교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제1항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정원 : 5인 이상

(2)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설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보호시설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기타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을 병용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을 병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4.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1인		1인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 우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 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기타											

비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29조제2항관련)

1. 급식위생관리(단기보호시설에 한한다)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제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 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실비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최소한의 실비로 정하여야 한다)
 -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장·이용노인대표·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명부

나.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다. 사업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이용자관리카드(서비스내용·이용횟수 등을 기록한다)

바.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주간보호시설 : 1일

(2) 단기보호시설 :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 업 내 용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활필수품의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2)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3) 우애서비스 : 말벗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2)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주간보호시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시설	가.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기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

6. 운영간담회의 설치

가.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이용자대표 및 가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이용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관련)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직원배치기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노인보건복지관련 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나.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제29조의3제4항관련)

1.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가정봉사원 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재가간병이론 등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기·실습교육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교육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매년 교육과정·교육내용·평가방법 및 담당 교수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9조의4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것
-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춘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력 배치기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장기관의 장 1인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가) 상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를 겸직할 수 있다.

(나)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1] <개정 1999.8.25>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임소자(이용노인)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 별표 2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나.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때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3.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가. 별표 4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때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 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가. 별표 7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9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별표 10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7.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8.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9. 비용의 수납위반 가.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10.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舊)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7호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7.10.16>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 명 :		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1313-13911일
 98.5.20 승인

87mm×63mm
 (보존용지(1종) 120g/m²)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소관 과·실 등의 명칭)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입소 의뢰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공 람		
처리과					
담당자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의
귀 시설입소를 의뢰합니다.

입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양의무자	성 명		입소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1.2.1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7.3>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명 칭		시설의종류	
복지 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 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입액		지출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제 호

-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시설(기관)명 :

소재지 :

시설(기관)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시설(기관)의 장 : 주민등록번호 :

입소(이용)정원(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변 경 사 항		
일자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노인전문병원설치 허가신청안내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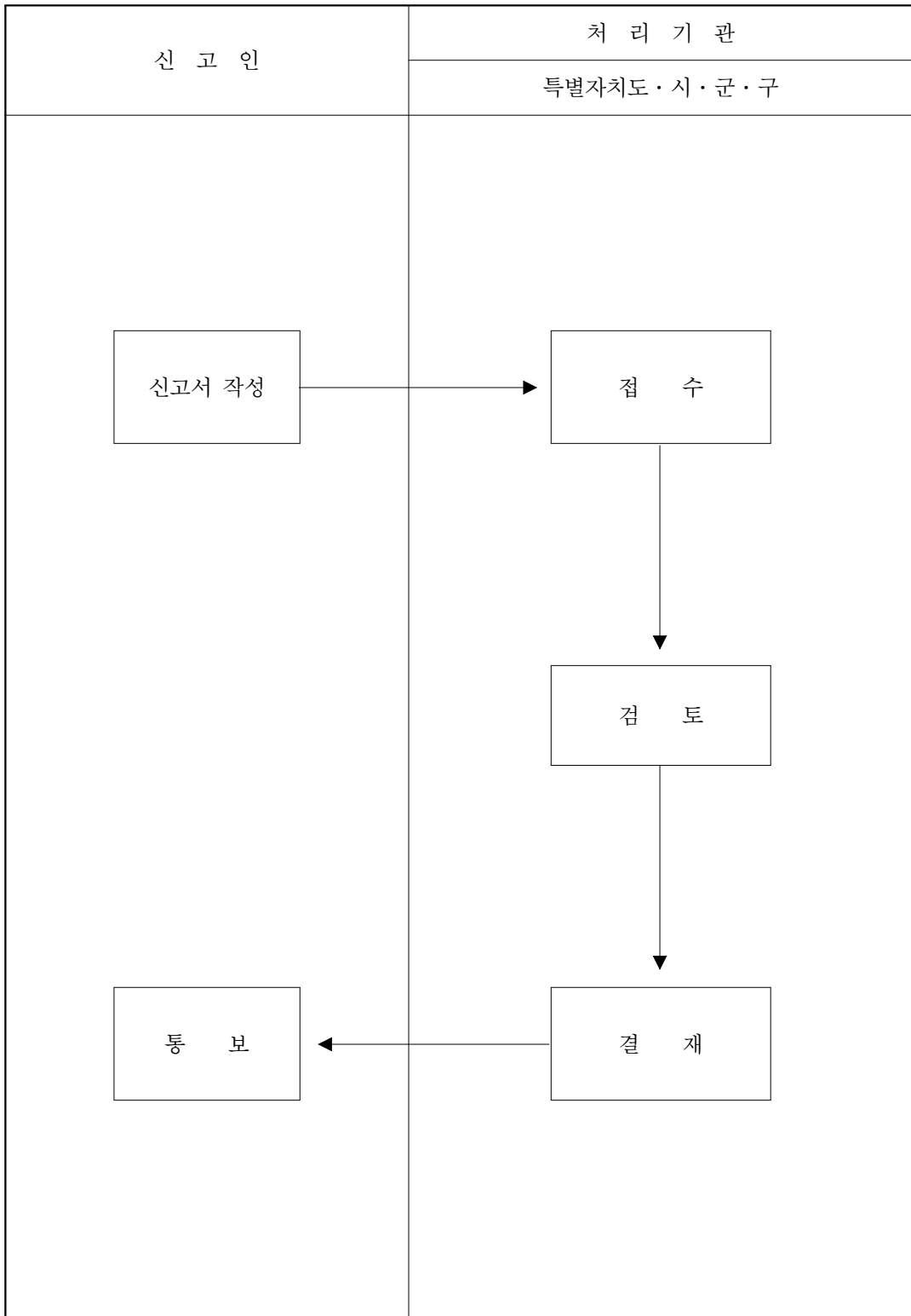
제출하는 곳	관할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처리부서	보건과 또는 의약과
유의사항	1. 노인전문병원 설치자가 그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33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67조). 3. 허가사항 중 설치장소의 이전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69조). 4.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71조).		

허가번호 제 호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				
의료기관	명 칭			
	소 재 지			
	진료과목			
설 치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 원 실	실	병 상	병상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인]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전화 :)			
기관개요	명 칭		시설의종류		
	소 재 지	(전화 :)			
	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영예정연월일				
기관설비	강의실 m ²	실기·실습실 m ²	사무실 m ²	세미나실 m ²	
	대지 m ²	건물 m ²	기타		
재가노인 복지시설	명 칭		시설의 종류(구체적 으로 기재합니다)		
	시설의 장		신고번호및 신고일자	제 호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 :)			
교육훈련 과정	양성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1기당 교육예상인원		양성교육 ()명 보수교육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 소						
기관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설비	사 무 실	m ²	상담실	m ²	프로그램운영실	m ²	
	기 타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 이외 전문자격소지자	
		명		명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제 호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정조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시·도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주소)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 성명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기관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	현 재				
		변경후				
사 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수수료	
					없 음	

– 6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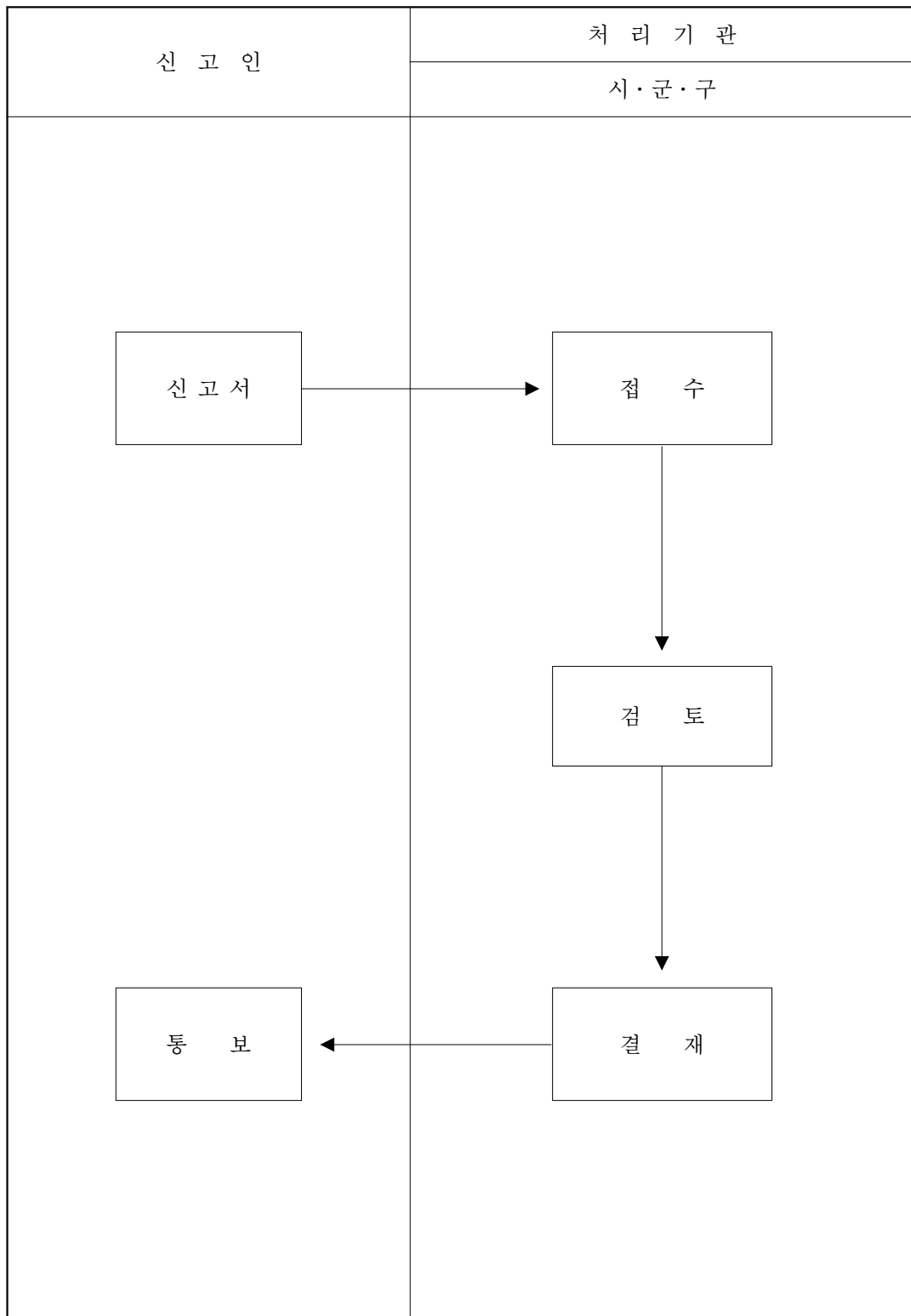
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속 :		사진 (2.5cm×3cm)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행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100mm×80mm(보존용지(1종) 120g/㎡)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제 년 월 일	호 일
	소재지	(전화 :)				
시설(기관)의 폐지 (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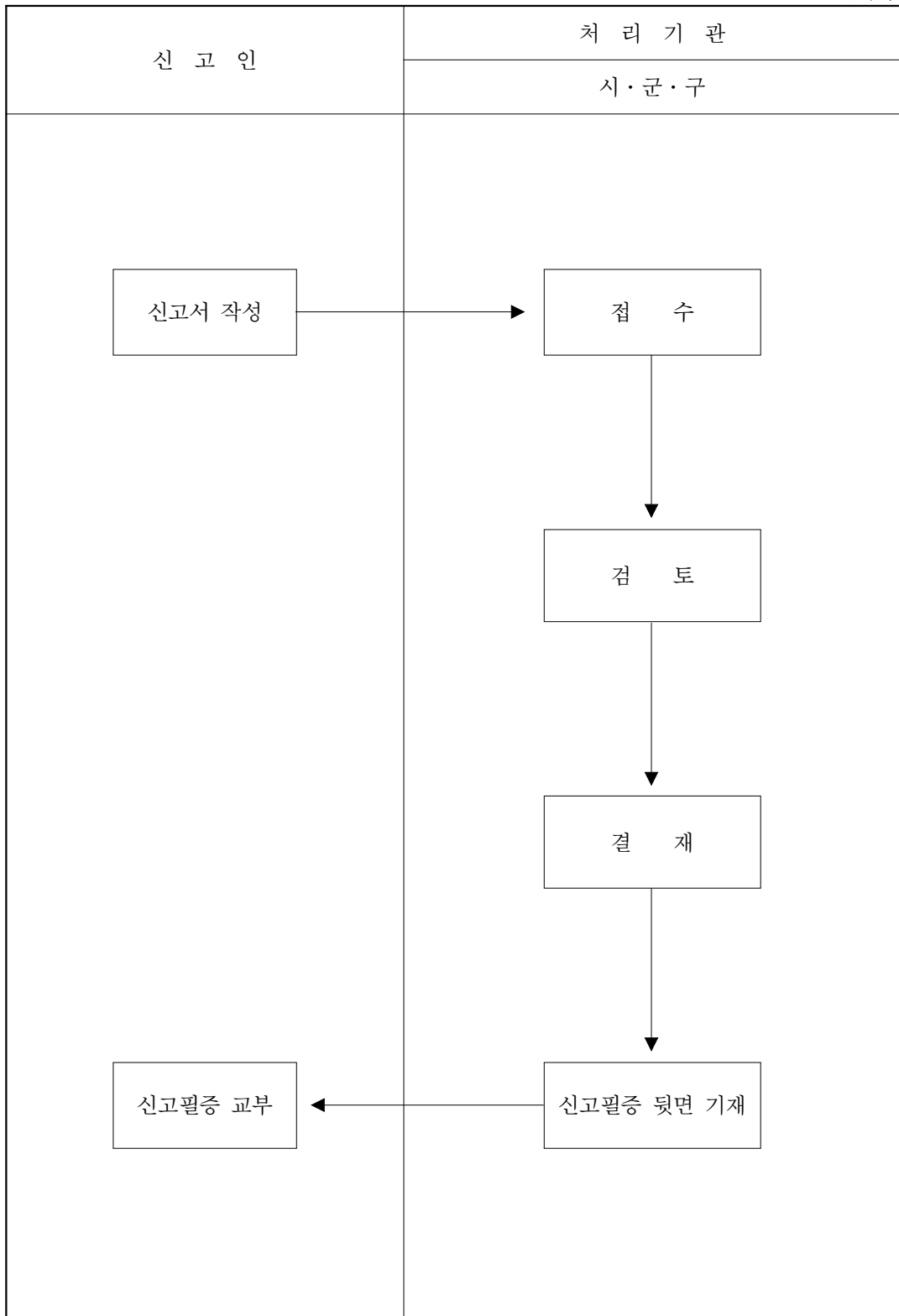
(뒤쪽)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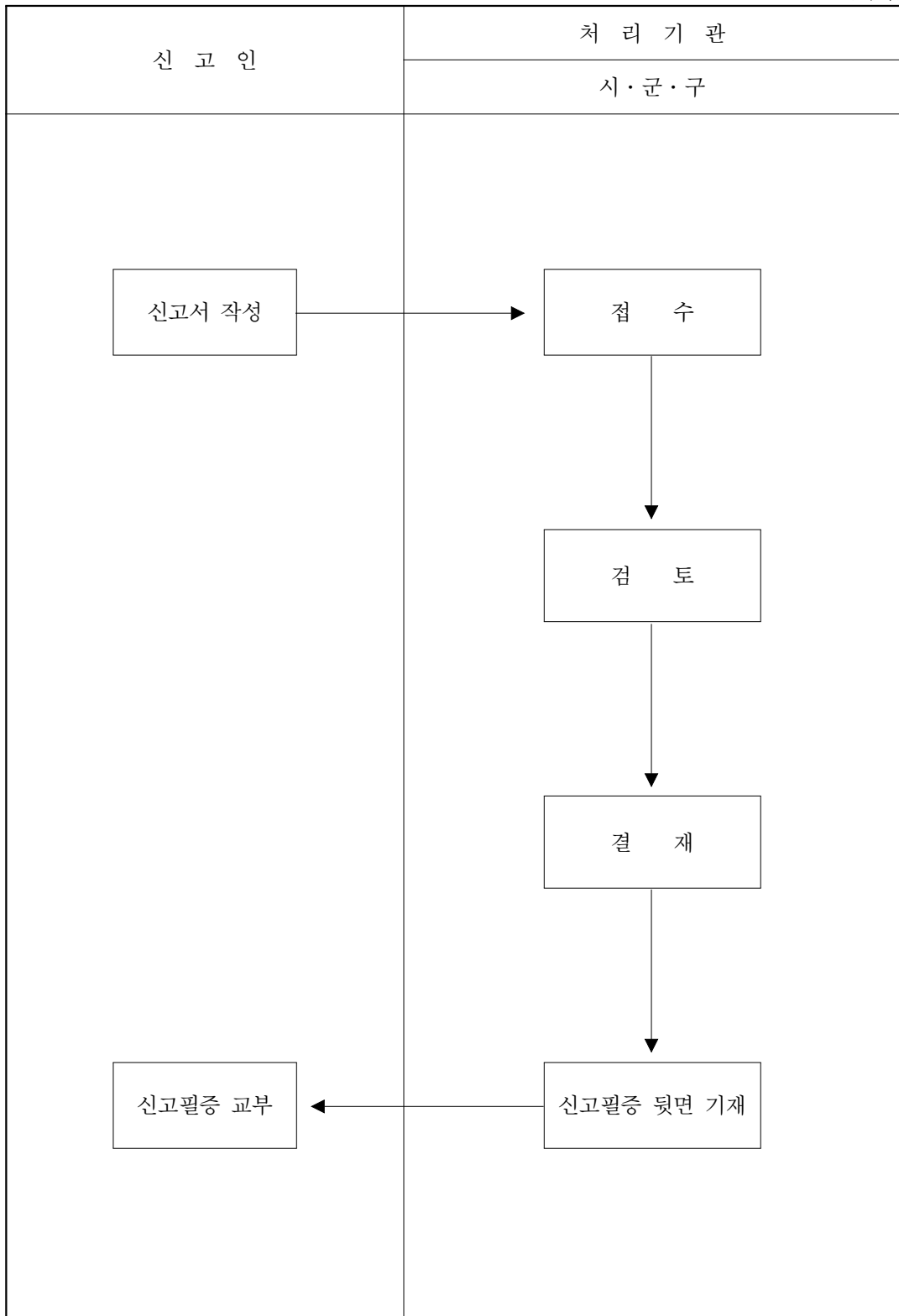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시 설 명										
우 〇〇〇-〇〇〇 주소 /전화()〇〇〇-〇〇〇〇 /전송()〇〇〇-〇〇〇〇 〇〇과 과장 〇〇〇 서기관(또는 사무관) 〇〇〇 담당자 〇〇〇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처 보존기간)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년)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실비입소자수를 기재합니다.										
구분	시설종류	개소 수	입소 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입소자수 (입원환자)	()년말 입소자수 (입원환자)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노인주 거복지 시설	양로시설								()	()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의 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	()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 전문요양시설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구분	개소수	이용정원	설치주체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 이용자수	()년말 이용자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구분	개소수	이용정 원	설치주체				보조시 설수	종사자수 (정원/현원)	전년말이용 자수	()년말 이용자수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999.8.25>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시 설 명		시설종류			
	소 재 지	(전화 :)				
	설치일자		이용정원 (이용노인수)	명		
	시설규모	연건평 m ²	설치비용	천원		
	직 원 수	총 명				
수납비용 (원/인, 일 또는 월)		* 노인휴양소·단기보호시설은 독신용, 동거용, 합숙용으로 구분·기재할 것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사 진 (2.5cm×3cm)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31313-15611일
98.5.20 승인

87mm×63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8.25>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8.25>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1999.8.25>